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육아나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를 지역·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 사유로 신설하며,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첫째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31조제2항 및 제11항)

- 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2)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나. 지역·기관 구분 모집자가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제9항)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

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 허용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57조의4제3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중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

라. 퇴직공무원 대상 공무상질병휴직 소급 변경 허용(안 제57조의7제6항)

현재는 공무원 신분인 자에 대해서만 당초의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상질병휴직의 소급 변경을 허용하도록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의6”을 “제57조의6, 제57조의8부터 제57조의10까지”로 한다.

제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모범적인 인사운영 성과의 발굴·확산을 통해 각 기관의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사행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행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균형인사정책””을 ““통합인사정책””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통합인사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균형인사정책”을 각각 “통합인사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통합인사정책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를 “대상 자녀별로”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를 “승진후보자”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31조제2항부터 제15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4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직위 파견자가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총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직위에 파견자를 교체하여 교체 이전과 이후 파견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 및 제1의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를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경우 그 사유가 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5조제9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2.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제45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32조의2”를 “제4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7제6항 중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을 “사람이 공무상질병휴직”으로, “경우에는”을 “경우(퇴직 후에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

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제1조(적용 범위) ①	-----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		-----	
	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	
	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		-----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		-----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		-----	
	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조,		-----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		-----	
	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		-----	
	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		-----	
	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		-----	
	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		-----	
	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		-----	
	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		-----	
	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		-----	
	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		-----	
	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	
	<u>제57조의6</u> , 제58조 및 제59조를			
		<u>제57조의6, 제57조의8부터 제57</u>		

적용하지 않는다.

② (생략)

제7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생략)

<신설>

<신설>

조의10까지---.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인사혁신처장은 모범적인 인사운영 성과의 발굴·확산을 통해 각 기관의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사행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행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균형인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⑥ (생략)

<신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

정한 사항 외에 우수 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통합인사정책”-----

----- 통합인사기본계획

-----.

② -----

-----.

1. 통합인사정책-----

2. 통합인사정책-----

3. ----- 통합인사정책-----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인사혁신처장은 통합인사정책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⑧ ----- 제7항-----

행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② (생략)

③ 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3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④ ~ ⑦ (생략)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나. (생략)

-----.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
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
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
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
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
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
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
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 3. (생략)

③ ~ ⑩ (생략)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
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
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
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
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
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

다. -----

-.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

-----.

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⑫ ~ ⑮ (생략)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④ ~ ⑩ (생략)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

----- 대
상 자녀별로 -----
-----.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승진후보자 -----

-----.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

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 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제41조(파견근무)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1. 2. (생략)

3.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하며, -----

 -----.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31조 제2항부터 제15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41조(파견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직위 파견자가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총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직위에 파견자를 교체하여 교체 이전과 이후 파견기간의

⑤ ~ ⑨ (생략)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⑤ (생략)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제18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다.

1. ~ 4. (생략)

⑦ (생략)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합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제2항제1호 및 제1의2호-----

-----.

1. ~ 4.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사전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⑨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제5조제2항에 따라 임

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 이
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을 말한다)에 전
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
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신 설>

⑩ ~ ⑬ (생략)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다만,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
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2.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
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
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으로의 전보) ① -----

_____.

_____.

1. (생략) 2. <u>법 제32조의2</u>에 따른 인사교 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 출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 행하는 공무원) ①·② (생략)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 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u>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 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 휴직 또는 공무상질병휴직 중 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u> 2. <u>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 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u> 3. <u>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 는 공무원</u>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 ⑤ (생	1. (현행과 같음) 2. <u>제48조제1항제1호</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 행하는 공무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 를 대행하도록 명한</u> ----- ----- ----- -----. <삭 제> <삭 제> <삭 제>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 ⑤ (현
---	--

략) ⑥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 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 간이 끝난 <u>공무원이 공무상질병 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 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 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 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u> ⑦ (생략)	행과 같음) ⑥ ----- ----- ----- ----- <u>사람이 공무상질병휴 직 ----- 경우 (퇴직 후에 공무상질병휴직 요 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 ----- -----.</u>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4